

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4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 및 시설설치 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비용의 산정방법 신설

(안 제2조의2 및 별표 1)

나.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신설

(안 제2조의3 및 별표 2)

다. 처리시설의 적정 규모 및 형식 결정주체 명확화(안 제3조)

라. 그 밖에 조문 형식에 맞지 않는 조번호 개정(안 제4조의2 및 제5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조례안, 신·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붙임

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비용의 산정)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.
2.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의 합으로 하되, 세부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.

제2조의3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) 영 제4조제3항제2호 각 목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소각시설”을 “폐기물처리시설”로, 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”을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의1을 제4조의2로 한다.

제5조의1을 제5조의2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(제2조의2 관련)

□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의 산정개요

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(=1+2+3)	항목		비고
	1. 시설부지 면적 [=(가+나+다)÷건폐율]	가. 폐기물처리시설 면적	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9조의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기준을 적용
		나. 관리동 면적	
		다. 세차동 등 그 밖의 시설 면적	
	2. 주민편의시설 면적		-
	3. 주변녹지대 면적		-

1. 시설부지 면적

- 시설부지 면적은 가, 나, 다를 합산한 면적에 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9조에 따른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.
- 시설부지 면적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.

가. 폐기물처리시설 면적

구분	1일 처리능력	1일 처리능력당 소요면적	비 고
폐기물처리시설 면적 (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)	100톤/일 이하	40㎡/톤/일	1기 기준 4,000㎡ 이하
	100톤/일 초과 300톤/일 이하	30㎡/톤/일	
	300톤/일 초과 500톤/일 이하	20㎡/톤/일	
	500톤/일 초과	10~15㎡/톤/일	
※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= 1일 처리능력(톤/일) × 1일 처리능력당 소요면적(㎡/톤/일)			

나. 관리동 면적

구분	1일 처리능력	1일 처리능력 별 소요면적	비 고
관리동 면적	500톤/일 이하	330㎡	작업인원 35~49명 기준
	500톤/일 초과	500㎡	작업인원 50~70명 기준

다. 세차동 등 그 밖의 시설

구분	1일 처리능력	1일 처리능력 별 소요면적	비 고
세차동 등 그 밖의 시설 면적	500톤/일 이하	330㎡	-
	500톤/일 초과	500㎡	-

2. 주민편익시설 면적

- 시설부지 면적의 10%를 적용

3. 주변녹지대 면적

-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 이상
-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 이상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(제2조의3 관련)

1.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서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산정기준

- 납부계획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연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「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」의 별첨 표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」 중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.

2.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 되는 폐기물량,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 산정기준

○ 산식 : $A = \frac{B}{C} \times D \times E$

A :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, 불연성 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

B : 구미시 생활폐기물(가정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) 발생량 중 종량제에 의한 혼합 배출량 중 가연성 폐기물량

C : 구미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

D : 택지의 계획인구

E : 변동계수

※ 비고 1 : 산식 중 B, C 항목은 납부계획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연도에 환경부에서 발간한 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」 기준임.

※ 비고 2 : 산식 중 E 항목은 기본적으로 1.2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.2 이상의 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3.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서의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·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산정기준

- 납부계획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연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「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」의 별첨 표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」 중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의 종류 및 방식은 구미시에서 현재 운용 중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·적용한다.

4.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 산정기준

○ 산식 : $A = \frac{B}{C} \times D \times E$

A :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

B : 구미시 생활폐기물(가정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)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

C : 구미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

D : 택지의 계획인구

E : 변동계수

※ 비고 1 : 산식 중 B, C 항목은 납부계획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연도에 환경부에서 발간한 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」 기준임.

※ 비고 2 : 산식 중 E 항목은 기본적으로 1.2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.2 이상의 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비용의 산정) 영</u> <u>제4조제3항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</u> <u>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</u> <u>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</u> <u>1.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</u> <u>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</u> <u>지의 공급미터당 조성원가로</u> <u>한다.</u> <u>2.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</u> <u>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</u> <u>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의 합</u> <u>으로 하되, 세부 적용기준은</u> <u>별표 1과 같이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3(택지개발사업에 따른</u> <u>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) 영</u> <u>제4조제3항제2호 각 목의 비용</u> <u>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</u> <u>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</u> <u>정한다.</u>
제3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) ①	제3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) ①

~ ③ (생 략) ④ <u>소각시설의 적정 규모 및 형식</u>은 <u>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</u>이 결정한다. ⑤ (생 략) <u>제4조의1</u> (생 략) <u>제5조의1</u>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폐기물처리시설</u>----- ----- <u>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-. ⑤ (현행과 같음) <u>제4조의2</u> (현행 제4조의1과 같음) <u>제5조의2</u> (현행 제5조의1과 같음)
--	--

관련법령

□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(宅地)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내야 한다.

②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,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7]

□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) ① 법 제6조제1항

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(宅地)"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(이하 이 조에서 "택지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② 법 제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"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.

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납부금액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.

1.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: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
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

가. 소각시설의 경우: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,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 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

나.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: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·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

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

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.

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, 매립시설 및 퇴비화·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2.3.30>

⑦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

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30>

- ⑧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(財源)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3.30>

[전문개정 2009.6.16]